

## FSS/2206-07 : 재고자산 과대계상

- 쟁점 분야: 재고자산
- 관련 기준: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
- 결정일: 2021년
- 회계결산일: 2015.1.1. ~ 2015.12.31.

### 1. 회사의 회계처리

A사(이하 ‘회사’)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이다. 회사는 동사지분 및 경영권을 외부에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회사 주력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감소하여 관련 재고가 누적되고 있었고, 회사 현업에서 수행한 재고실사 결과가 ERP 상 재고현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등 재고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하였다.

당시 회사는 매각 작업을 원활히 진행되게 할 유인이 존재하였고, 재고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불량·파손·진부화된 재고의 감모손실 및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였다.

### 2.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

회사의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, 재고자산의 회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감모손실 및 평가손실 징후가 발생하였고, 회사 현업에서 수행한 재고실사 결과가 ERP 상 재고현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등 재고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재고자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. 재고자산 과대계상 관련 회사의 회계처리 위법행위를 정정할 경우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여 상장퇴출 요건을 충족한다.

### 3.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

-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(재고자산)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판매시,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,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, 회사가 불량·파손·진부화된 재고의 감모손실 및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.

#### **4. 감사절차 미흡사항**

① 감사기준서 200(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) 문단 15, 감사기준서 500(감사증거)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,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,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.

② 감사인은 회사 주력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감소하여 관련 재고가 누적되고 있고, 회사 협업실사자료가 ERP 등 전산시스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등 재고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재고관련 회사의 내부통제절차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실사 과정에서 불량·파손·진부화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재고자산 관련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.

#### **5. 시사점**

영업환경, 회사의 재무상황 등 제반 조건을 통하여 회계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, 특히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 테스트 및 ERP 등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등 감사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.